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국투자 력서리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투자 력서리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투자 력서리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kitmc.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09년 3월 23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09년 10월 12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조좌)
(모집 또는 매출 총액)
 7. 모집 또는 매출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판매기간)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02-3276-4700, www.kitmc.com
한국금융투자협회 →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관련 해당사항 없음
-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 (세전기준)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4. 전환 절차 및 방법

IV. 요약 재무정보

1.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명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투자 럭셔리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63100
A	63099
C	63792
C-W	82868
C-F	17236

2. 모집예정기간 : 모집(판매)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조좌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한국투자증권빌딩 (대표전화 : 02-3276-4700, www.kitmc.com)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세부내용
외국주식	60%이상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채권	40%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이어야 한다.)
집합투자증권등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장내·외 파생상품 [아래 참조]

법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 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신탁계약서 제19조 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투자대상 파생상품

투자대상		기초자산	투자의 목적	투자대상 세부내용
장내 파생상품	채권관련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및 헤지외목적	
	통화관련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헤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할 수 있음.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장외 파생상품	금리스왑거래	이자율	헤지 및 헤지외목적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 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통화관련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 로 하는 지수 등	헤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할 수 있음.
(주1)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위험회피거래를 제외함)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이하가 되도록 투자합니다.				

(주 1) 상기 투자대상은 투자대상 중 일부를 기재한 것으로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명품(Luxury Goods)”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MSCI World X 90%) + (CALL X 10%)]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운용전략

-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세계적인 명품(Luxury Goods)”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주식 (이하 “명품기업주식”) 중에서 내재가치가 우량하고, 향후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명품기업주식에 투자할 예정이며, 운용전략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명품기업주식 중에서 약50여 개의 투자가능기초종목을 선정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명품기업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전세계의 주식형펀드

중에서 아래 5개의 주식형펀드에서 투자하는 종목을 참고로 하여 투자가능기초종목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명품기업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운용회사	펀드명	설정일	순자산(2006.10)	상장국가
Clariden	Luxury Goods Equity Fund	2000/08/25	EUR 10억1600만	스위스
ING	ING Prestige & Luxury Fund	2003/02/10	EUR 6,800만	네덜란드
UBS	UBS Luxury Focused Fund	2000/09/13	EUR 2,607만	미국
CSFB	CSFB Luxury-Global Prestige Fund	2006/07/07	EUR 2,523만	미국
Fortis	Fortis Prestige Equity Fund	1999/12/01	EUR 344만	벨기에

√ 상기에서 선정된 약50여개의 투자가능 기초종목 중에서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 산업별배분 및 국가별배분을 거쳐 약20여개의 투자종목 및 약10여개의 투자예비종목을 선정 후 투자·운용합니다.

√ 투자종목은 원칙적으로 매분기단위로 리밸런싱을 실시할 예정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리밸런싱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투자종목의 추가하락 시 :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약20%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 투자종목기업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이 시장에 발생하는 경우: 불매운동, 모조품에 의한 영업력약화 등
- 투자종목기업의 기업투명성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투자신탁 운용상 필요한 경우: 신규 투자종목 발굴 등

(2) 환위험 관리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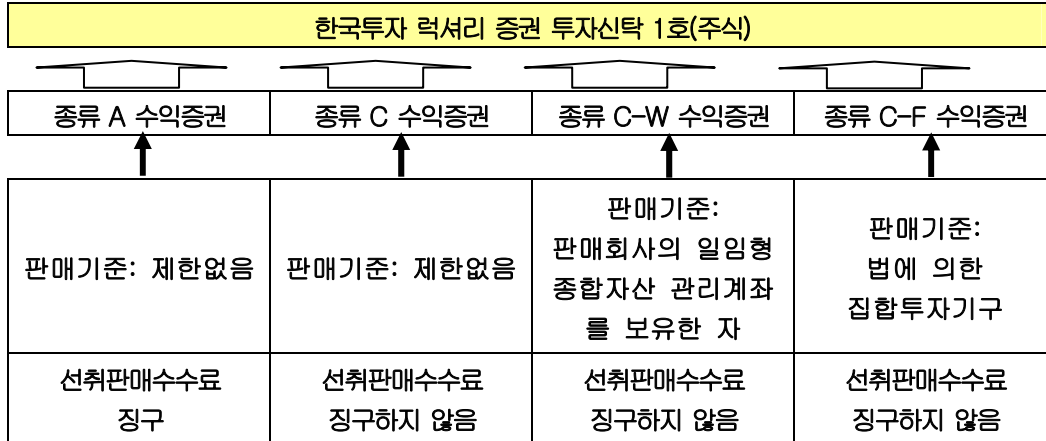
-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미국달러화, 유로화, 엔화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70%~100%범위내에서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수익구조

※ 당해 투자신탁의 구조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 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외국 주식 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 주식, 채권 및 집합투자증권 등은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가 원화 대비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위에서 설명한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70% 이상 범위 내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헤지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예정이지만,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투자원금액 손실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액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실제 헤지비용이 목표 헤지비용 범위를 일시적으로 초과 또는 미달하여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스왑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시 계약조건에 의해 현재환율이 계약환율 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 주식, 채권 등 외국증권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외국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기회비용 및 수수료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통화가치 하락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해외투자 분 순자산가액(NAV)의 70%~100% 범위에서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환헤지를 실행하게 된다면, 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발생 가능한 환차익을 얻을 수 없어 그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정된 투자대상(“세계적인 명품(Luxury Goods)”)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주식 및 파생상품 등은 투자대상국가(선진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당해 국가의 급격한 정치·경제적 변화로 인해 투자신탁 자산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종집중 위험	이 투자신탁은 “세계적인 명품(Luxury Goods)”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기본 투자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 분산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해당업종(“세계적인 명품(Luxury Goods)”)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사건 등이 발생시 다양한 업종에 분산투자하는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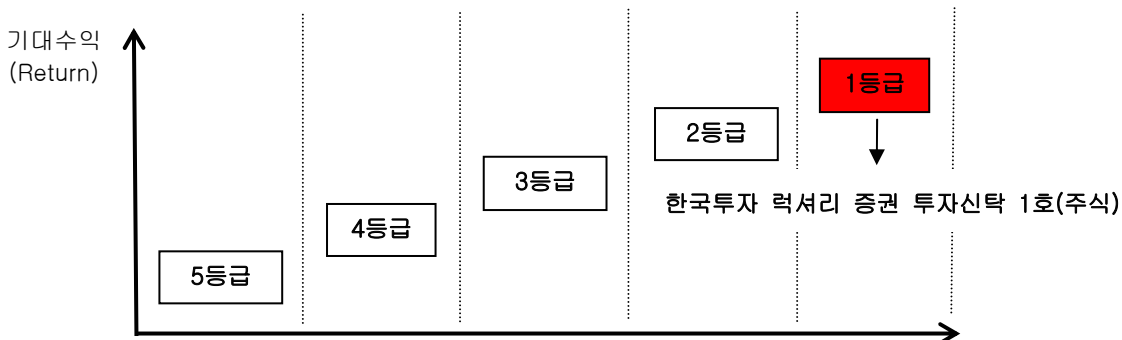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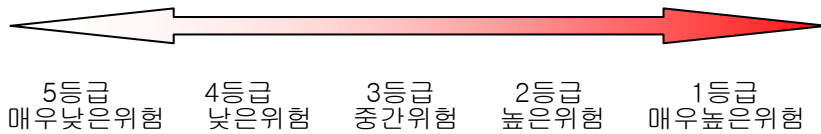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오퍼레이션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 폐장 및 개장시기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운영 위험이 국내 투자 보다 더 높습니다.
환율제도에 따른 위험	일부 국가의 통화가치는 자유변동환율제도에 의해 그 가치가 변동되고, 일부 국가의 통화가치는 미국 달러화 등의 환율에 연동되어 그 가치가 변동됩니다. 이 경우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국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원/달러 선물 등)을 헤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위험 헤지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부재하는 경우, 투자대상 정책당국이 외환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대상 정책당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연동통화 대비 평가절하 시키는 경우 등의 이유로 환헤지의 유효성은 약화될 수 있고, 이 경우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지어는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p>경우</p> <p>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p> <p>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p>
<p>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p>	<p>국내·외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주식에의 투자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주식형투자신탁으로서 주식시장 하락 등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되고, 또한 환율변동위험에 일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가격의 변동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또한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6.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2009.03.23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현동식	1971	팀장	22 개	10,697 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 무역학과 - 1999.07~2002.03 : 삼성생명 주식운용팀 리서치 및 주식운용 - 2002.04~2003.04 : 삼성투자신탁운용 LT주식팀 주식운용 - 2003.04~2006.04 : 새마을금고연합회 주식운용 - 2006.05~현재 :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본부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 전문인력입니다.

(주 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7. 투자실적 추이 (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기 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8.03.16 ~09.03.15	07.03.16 ~09.03.15			06.12.15 ~09.03.15
투자신탁(전체)	-38.51	-29.81			-27.11
비교지수	-42.88	-24.87			-22.64
종류 A	-39.73	-31.19			-28.53
비교지수	-42.88	-24.87			-22.64
종류 C	-40.28	-31.82			-30.41
비교지수	-42.88	-24.87			-23.61

(주 1) 비교지수: (0.9 * [MSCI_World]) + (0.1 * [C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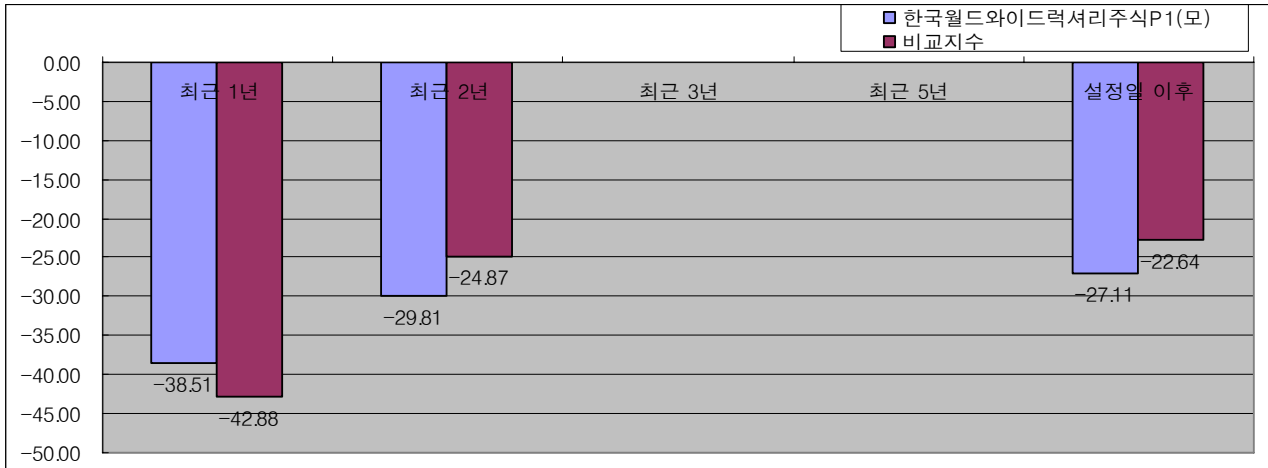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설정일 이후 기간은 최초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율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율의 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 수익증권율 설정일에 관한 사항은 “제 2 부. 6. 집합투자 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에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연평균 수익률 그래프 (세전 기준)



(주 1)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단위:%]

기 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08.03.16 ~09.03.15	07.03.16 ~08.03.15			
투자신탁(전체)	-38.51	-19.88			
비교지수	-42.88	-1.18			
종류 A	-39.73	-21.43			
비교지수	-42.88	-1.18			
종류 C	-40.28	-22.17			
비교지수	-42.88	-1.18			

(주 1) 비교지수: (0.9 * [MSCI_World]) + (0.1 * [CALL])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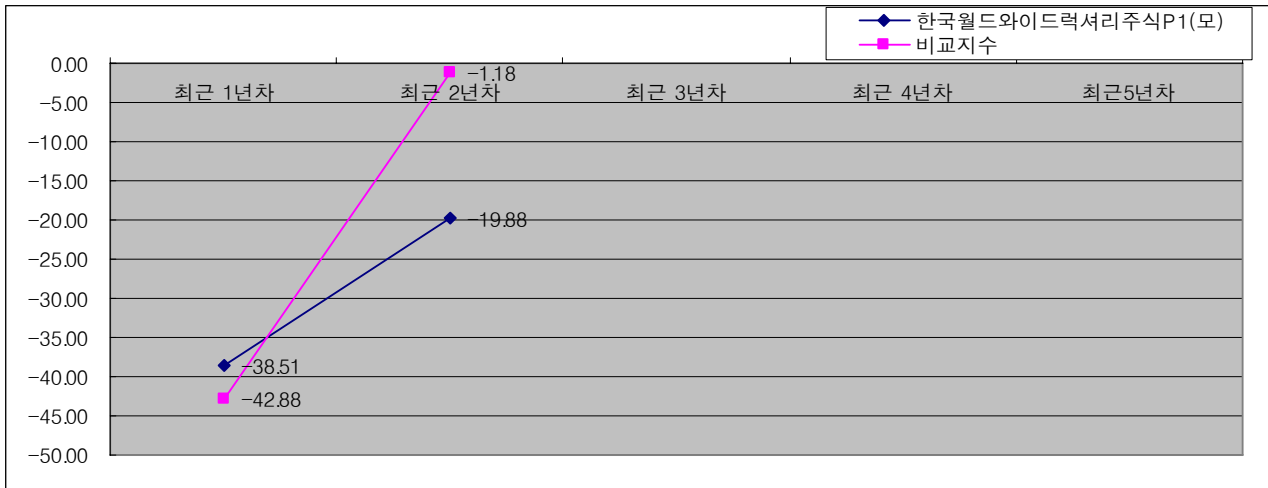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연도별 수익률 추이 그래프 (세전 기준)



(주 1)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 C-W	종류 C-F	
가입자격	제한없음	제한없음	일임형 랩	집합투자기구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	-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	-	환매시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 30일 미만:이익금의 70% - 30일이상 90일 미만:이익금의 30%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 C-W	종류 C-F	
가입자격	제한없음	제한없음	일임형 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보수	0.800	0.800	0.800	0.800	최초
판매회사보수	1.000	1.900	-	0.030	설정일
신탁업자보수	0.050	0.050	0.050	0.050	로부터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4	0.014	0.014	0.014	매3개월 후급
기타 비용	0.0976	0.0810	0.0976	0.0976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9616	2.8450	0.9616	0.9916	
증권 거래비용	1.1970	1.2055	1.1970	1.1970	사유 발생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07.12.15 ~ 2008.12.14]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종류 C-W 수익증권 및 종류 C-F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 A]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07.12.15 ~ 2008.12.14]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C-W 수익증권 및 종류 C-F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 A] 수익증권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 분		투자기간			
		1 년 후	3 년 후	5 년 후	10 년 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99	711	1,148	2,360
종류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92	893	1,520	3,205
종류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9	308	534	1,184
종류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2	317	550	1,219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C 와 종류 A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1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 - 국내비과세소득)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한도 세율 22%)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게시하지 아

	니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tmc.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종류별 기준가격이 다른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매입 절차

(1) 수익증권의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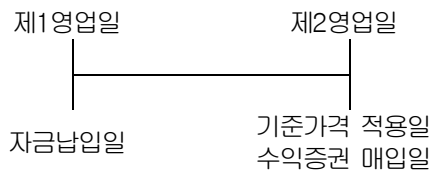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구분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
종류 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0%
종류 C	제한없음	없음
종류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 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없음
종류 C-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없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17시[오후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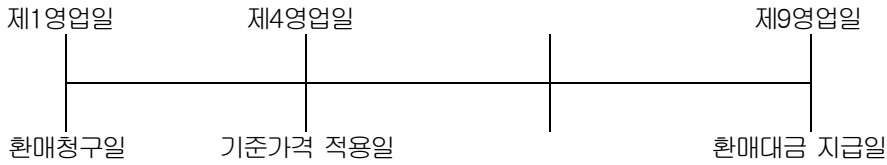
다. 환매 절차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7시[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부담비율		비고 (부담시기)
	종류 A	종류 C / 종류 C-W / 종류 C-F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기준 징수)	30일 미만 : 이익금의 10%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4. 전환 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1) 투자신탁(전체)(종류모)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기	제 1기	
	(2008.12.14)	(2007.12.14)	
운용자산	21,578,873,964	62,490,679,004	0
증권	19,563,929,471	61,681,279,766	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014,944,493	809,399,238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57,174,626	1,823,090,385	0
자산총계	21,736,048,590	64,313,769,389	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84,437,033	1,439,133,634	0
부채총계	384,437,033	1,439,133,634	0
원본	39,142,789,820	64,577,172,307	0
수익조정금	3,564,641,261	3,935,351,708	0
이익잉여금	-21,355,819,524	-5,637,888,260	0
자본총계	21,351,611,557	62,874,635,755	0

(주 1)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기	제 1기	
	(2007.12.15 - 2008.12.14)	(2006.12.15 - 2007.12.14)	
운용수익	-20,273,392,000	-5,520,179,354	0
이자수익	164,944,641	488,130,221	0
배당수익	536,643,640	2,252,197,022	0
매매/평가차익(손)	-20,974,980,281	-8,260,506,597	0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23,333,827	91,598,544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23,333,827	91,598,544	0
기타비용	27,118,627	26,110,362	0
당기순이익	-20,323,844,454	-5,637,888,260	0
매매회전율	376.36	153.4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가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가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전기 대비 매매회전율은 (222.96)% 상승되었으며, 이는 빈번한 환매요청에 의한 주식의 매도가 증가되었고 이에 투자신탁 설정잔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빈번한 환매가 발생될 경우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전략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종류 A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기	제 1기	
	(2008.12.14)	(2007.12.14)	
운용자산	9,789,120,381	29,402,203,715	0
증권	9,789,120,381	29,402,203,715	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40,096,414	550,751,821	0
자산총계	9,829,216,795	29,952,955,536	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94,235,511	696,653,459	0
부채총계	94,235,511	696,653,459	0
원본	18,559,779,304	30,625,442,473	0
수익조정금	1,753,551,178	2,332,374,549	0
이익잉여금	-10,578,349,198	-3,701,514,945	0
자본총계	9,734,981,284	29,256,302,077	0

(주 1)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기	제 1기	
	(2007.12.15 - 2008.12.14)	(2006.12.15 - 2007.12.14)	
운용수익	-9,423,579,102	-3,032,614,207	0
이자수익	0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9,423,579,102	-3,032,614,207	0
기타수익	314,003	8,763,255	0
운용비용	318,754,273	666,994,621	0
관련회사 보수	318,754,273	666,994,621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6,596,856	10,669,372	0
당기순이익	-9,748,616,228	-3,701,514,945	0
매매회전율	0.00	0	0

(3) 종류 C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기	제 1기	
	(2008.12.14)	(2007.12.14)	
운용자산	11,562,491,176	33,472,432,040	0
증권	11,562,491,176	33,472,432,040	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9,014,261	739,693,708	0
자산총계	11,581,505,437	34,212,125,748	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12,492,537	985,824,700	0
부채총계	112,492,537	985,824,700	0
원본	22,474,049,604	35,413,122,921	0
수익조정금	1,841,096,761	1,877,540,606	0
이익잉여금	-12,846,133,465	-4,064,362,479	0
자본총계	11,469,012,900	33,226,301,048	0

(주 1)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기	제 1기	
	(2007.12.15 - 2008.12.14)	(2007.01.04 - 2007.12.14)	
운용수익	-10,900,265,352	-2,605,274,053	0
이자수익	0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0,900,265,352	-2,605,274,053	0
기타수익	235,811	11,932,196	0
운용비용	553,655,002	1,458,476,826	0
관련회사 보수	553,655,002	1,458,476,826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4,637,380	12,543,796	0
당기순이익	-11,458,321,923	-4,064,362,479	0
매매회전율	0.00	0	0